

2026년도 상시면접 제3회 해기사 시험 시행 공고

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공고 제2026-158호

2026년도 상시면접 제3회 해기사 시험을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7일
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

1. 면접시험 시행직종 및 등급

- 1~6급 항해사 및 기관사, 1~4급 운항사 및 통신사, 소형선박조종사

2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가. 응시원서 교부

1) 인터넷 다운로드

-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(<http://lems.seaman.or.kr>) 접속
➔ 고객마당 ➔ 자료실 ➔ 해기사시험 응시원서 출력(앞, 뒤 양면으로 출력)

2) 방문교부

- 부산지역 :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(부산 영도구 해양로 367 소재)

나. 응시원서 접수

1) 접수기간 : 2026. 7. 15.(수), 10:00 ~ 7. 17.(금), 18:00까지

- 인터넷접수 : 2026. 7. 15.(수), 10:00 ~ 7. 17.(금), 18:00까지
- 방문 및 우편접수 : 2026. 7. 15.(수), 10:00 ~ 7. 16.(목), 18:00까지

- 2026년 제헌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, 접수기간 1일 연장
- 접수 마감일(7월17일)은 법정공휴일로 인터넷 접수만 실시
- 우편접수는 7월16일(목),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

2) 접수방법

- 인터넷접수 :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(<http://lems.seaman.or.kr>) 접속
→ 원서 접수 → 본인인증(휴대폰 or 아이핀) → 해기사 → 원서 접수
- 방문접수 :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(부산 영도)에 방문접수
- 우편접수 :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에 우편접수(수수료 동봉)

3) 접수시간

- 인터넷접수 : 접수 시작일 10:00 ~ 접수 마감일 18:00까지
(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)
- **방문 및 우편 접수** : 접수 시작일 10:00 ~ **2026. 7. 16.(목), 18:00까지**
※ 우편접수는 2026. 7. 16.(목),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
3. 응시원서 접수 시 구비서류

가. 응시원서(소정양식) 1부

나. 사진 1매(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, 탈모 가로 3cm×세로 4cm)

다. 응시수수료

구 분	금 액
1~2급(항해사, 기관사, 운항사, 통신사)	15,000원
3~4급(항해사, 기관사, 운항사, 통신사)	14,000원
5~6급(항해사, 기관사)	13,000원
소형선박조종사	10,000원

라. 원서접수 시 확인사항

-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개정(2012.10.31)으로 응시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고, 응시원서만 제출
 - 필기시험 전부면제(면접응시) 또는 일부과목 면제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면허발급 신청 시 지방해양수산청에 한번만 제출
 - 단, 면제요건으로 시험에 응시할 때는 원서접수 이전에 면제자격을 갖추어야 하며, 그 사실을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응시자 본인이 사실임을 확인해야 함.
- ☞ **면제요건을 갖추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면 합격해도 면허를 받을 수 없음.**
- ※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등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문의

※ 응시원서 기재사항은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4. 시험일시 및 장소

- 가. 일 시 : 2026. 7. 25.(토), 10:00부터
- 나. 장 소 :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관 등(부산 영도구 해양로 367 소재)
- 다. 준비물 : 신분증

5. 합격자 발표

- 가. 일 시 : 2026. 7. 27.(월), 17:00
- 나. 방 법
 - 1)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(<http://lems.seaman.or.kr>) 접속
→ 접수 및 합격자 정보 → 합격정보 → 확인
 - 2) 단문자(SMS) 발송 : 접수 시 등록된 휴대폰으로 문자서비스 제공

6. 접수 취소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안내

- 가. 접수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
 -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(<http://lems.seaman.or.kr>) 접속
→ 원서접수(접수확인 및 취소) → 본인인증(휴대폰 or 아이핀) → 접수 취소
 - 무통장 입금의 경우 해당 화면에서 입금될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.
- 나. 접수기간 마감 후 취소하는 경우
 -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(<http://lems.seaman.or.kr>) 접속
→ 원서접수(접수확인 및 취소) → 본인인증(휴대폰 or 아이핀) → 접수 환불
 - 해당 화면에서 환불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.
 - 시험 종료 후 영업일 10일 이내에 개인 은행 계좌번호로 반환 규정에 따라 환불금액을 입금 처리하여 드립니다.
 - ※ 환불하는 경우 응시원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
1.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: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
2.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하였거나,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시간적 또는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: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및 교통비 취소 수수료 등을 원장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3.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: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
4.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: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60
5. 해당 시험일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: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50

6.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환불

- 6-1.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·(외)조부모·형제·자매, 배우자, 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
- 6-2.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(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)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(의료기관의 입원 확인서 첨부)
- 6-3.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 시 국가(공공기관 포함)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 확정 판정을 받거나, 격리대상자로 판정(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)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(국가(공공기관) 및 의료기관 발급한 확인서 첨부)
- 6-4.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, 외출 등이 금지되어(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)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(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)
- 6-5.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(경찰서 확인서 등 첨부)

7. 결격사유

(선박직원법 제6조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 없다.

- 1. 18세 미만인 사람
- 2.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(「수산업법」 제68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)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8. 응시자 주의사항

- 가. 시험을 응시하는 데는 자격제한이 없으나, 최종 시험합격 후 면허교부 신청 시 모든 자격이 갖추어져야 면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응시원서 제출 전에 시험합격 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응시원서를 잘못 기재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, 접수 완료 후 응시표에 표기되는 **응시직종, 시험형태, 시험일시 등을 반드시 확인**하고, 시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다. **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선원수첩, 모바일 신분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)은 반드시 지참하셔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**

라. 시험당일 시험실시와 관련한 안내가 있으므로 **입실시간은 반드시 준수**하셔야 합니다.

마. **응시자는 대기시간 및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[휴대용 전화기, 스마트워치, 테블릿,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(PDA),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(PMP), 휴대용 컴퓨터, 휴대용 카세트, 디지털 카메라, 음성파일변환기(MP3), 휴대용 게임기, 전자사전, 카메라펜,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]을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.**

☞ 응시자 대기실에서 **시험 시작 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전부 회수, 응시자별 시험 종료 시 지급**

바. 접수된 응시원서와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이 취소되며, 시험 시행 중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2년간 시험응시를 제한합니다.

사. 면접시험의 **합격 유효기간은 3년**이므로 **3년 이내**에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**면허발급 신청**을 하시기 바랍니다.

아. 시험당일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차량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9. 참고사항

○ 승무경력 인정 관련사항

<p>예시 1) 소형선박조종사 승무 경력 인정 여부</p>	<p>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위한 합정경력은 2011.02.14.이후부터 승무경력 인정</p>
<p>예시 2) 승무경력기간 계산</p>	<p>선박직원법시행령 제7조(승무경력기간의 계산) ① 승무경력기간은 승선한 날로부터 하선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되, 승선한 날로부터 기산한다. ② 제1항의 경우 1월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30일을 1월로 하고, 1년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12월을 1년으로 한다.</p>
<p>☞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문의</p>	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 또는 능력평가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종합민원실 : 콜센터 ☎ 1899-3600, FAX 051-624-9081
(주소) 49111,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
- 능력평가팀 : ☎ 051-620-5831~6, FAX 051-626-7556